

1. 개정이유

출항·조업 제한 기준 및 선단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출어 등록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어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입항 신고 시(어선의 승선원 변동 시) 5톤 미만 승선원 2명 이하인 경우 전화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정
- 나. 제4조 [별표1] 비고에 명시 된 내용을 본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
- 다. 특정해역 등에 출어등록 시 해양경찰서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, 신분증 제시로 갈음하는 것으로 개정
- 라. 어선 교신가입 기한을 출항 전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
- 마. 선주, 어선원의 안전조업교육 이수기간을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하는 것에서 직전 교육을 이수한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것으로 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”를 “수 있으며 5톤 미만 어선으로 승선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어선법」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 및 「어선법」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(「수산업법」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「수산업법」 제27조제1항·제3항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1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은 「어선법」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 중 1개와 「어선법」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1개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)
2.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(船團)을 편성하고,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해리 이내로 유지할 것(선단 편성 방법 등은 제9조제1항부터 제6항

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제5항제4호는 제외한다)

3. 관할 안전본부에 선단 편성에 대한 사전통지를 할 것

④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예상 항로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.

⑤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출어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”를 “출어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,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5호서식”을 “「전파법」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출항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“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”를 각각 “교육을 이수한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제2호 중 “교육 이수 후 1년 이내(1년 이상”을 “교육을 이수한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수(1년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) ① (생략)	제2조(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(확인)서 기재 내용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(확인)서의 제출을 같음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수 있으며 5톤 미만 어선으로 승선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</u> 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조(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) ① (생략)	제4조(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. 다만,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및 조업을 할 수 있다.

1. 태풍 외의 사유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을 것

2.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

-----.

1. 어선법」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 및 「어선법」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(「수산업법」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「수산업법」 제27조제1항·제3항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1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은 「어선법」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 중 1개와 「어선법」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1개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)

2.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(船團)을 편성하고, 어선 간 최대거리를 6해리 이내로 유지할 것(선단 편성 방법 등은 제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

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

3.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(船團)을 편성하고,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마일 이내로 유지할 것

4. 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를 할 것

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6조(출어등록의 절차·방법 등)

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출어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

을 준용한다. 다만, 제5항제4호는 제외한다)

3. 관할 안전본부에 선단 편성에 대한 사전통지를 할 것

<삭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예상 항로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.

⑤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.

제6조(출어등록의 절차·방법 등)

① -----

식의 출어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0조(교신가입의 신청)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신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4조(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)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(이하 “교육대상자”라 한다)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(이하 “안전조업교육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.

1. 정기교육

가. 어선의 소유자: 어업허가 또는 어업·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

---- 출어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,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교신가입의 신청) ① -----
----- 「전과법」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출항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
가. -----

----- 교육을 이수한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

나.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
교육대상자: 선장, 기관장,
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
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
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
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
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
이수

2. 특별교육

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
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
후 1년 이내(1년 이상 특정해
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
다)에 이수

② ~ ⑦ (생 략)

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
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[별표 1]

구분	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	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
1. 태풍주의 보·태풍 경보·풍	모든 어선의 출 항 및 조업 제한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

31일까지 -----

나. -----

교육을 이수한 그 다음 해
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
지 -----

2. -----

----- 교육을 이
수한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
12월 31일까지 이수(1년이상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
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[별표 1]

구분	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	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
1. 태풍주의 보·태 풍경보	모든 어선의 출 항 및 조업 제한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

람경보		의 어업지도선, 해양 경찰관서 합정의 안 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 제5 조에 따른 무선설비 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)은 무선설 비를 상시 켜고 경보 를 청취할 것
2. 풍랑주의 보	총톤수 15톤(태 풍으로 인한 풍 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 0톤으로 한다) 미 만인 어선의 출 항 및 조업 제한	
3. 폭풍해일 주의보· 폭풍해일 경보	-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 찰관서 합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 의 대피 명령을 준수 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 제 5조에 따른 무선설 비가 설치된 어선으 로 한정한다)은 무선 설비를 상시 켜고 경 보를 청취할 것

비고

- ~~1.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
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
상황 및 예상 항로 등을 고려하여 어
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.~~
- ~~2.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
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의 합정은
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
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
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
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
있다.~~

· 풍랑 경보		의 어업지도선, 해 양경찰관서 합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 동 및 항 또는 만으 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 제 5조에 따른 무선설 비가 설치된 어선으 로 한정한다)은 무 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
2. 풍랑주의 보	총톤수 15톤 미 만인 어선의 출 항 및 조업 제한	
3. 폭풍해일 주의보 · 폭풍 해일경 보	-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어업지도선, 해양 경찰관서 합정의 항 내 정박선 안전지대 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 제 5조에 따른 무선설 비가 설치된 어선으 로 한정한다)은 무 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

비고

- 안전본부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
우 기상특보의 내용과 어선의 안전조
치 및 준수사항 등을 1시간마다 방송
하여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이 신
속히 대피하도록 해야 하며, 어선의
대피 상황을 4시간마다 해양수산부
장관에게 보고하고, 필요 시 해양경
찰서, 시·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
야 한다.

3. 안전본부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기상특보의 내용과 어선의 안전 조치 및 준수사항 등을 1시간마다 방송하여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 하며, 어선의 대피 상황을 4시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필요 시 해양경찰서, 시·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	
---	--